

컬러리스트 자격인증제도

안옥희<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교수>
김연지<영남대학교 생활과학부 객원교수>

1. 컬러리스트란?

컬러리스트를 아십니까? 컬러리스트(colorist)는 색채이론 및 실무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로 일부 국가에서는 컬러 코디네이터라고도 한다. 컬러리스트는 디자인, 상품개발, 채색 등 색채관련 프로젝트 전반에 참여하여 조사, 분석, 기획, 디자인, 재규정, 검토, 실행,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유무형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현대사회에서는 기술의 보편화로 인한 감성요인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제품뿐만 아니라 사람의 첫인상의 대부분은 컬러에 의해 평가된다. 또한 산업 전반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컬러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각 산업계에서도 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선진국들에서는 색채연구의 중요성을 오래 전에 인식하고 색채연구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1980년대에 이미 도쿄상공회의소 주관 하에 컬러리스트 자격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인 색채관련 인력을 양성해 오고 있으며, 현재 3개 등급(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 자격증 취득 자를 배출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소수의 연구기관들이 필요에 따라 색채에 관한 단편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는 정도였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현재 우리나라 산업 분야에서 색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 인력이 약 50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색채 전문인력 양성을 보면 색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육수준이 달라 늘어나는 색채분야의 수요를 담당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으므로 체계적인 훈련을 통한 색채전문가의 양성이 시급하다.

이와 같이 색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체계적인 색채전문가 양성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컬러리스트 자격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한국색채학회가 2000년에 '컬러리스트 국가 기술자격 종목개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기반체제를 정비하여, 2002년 4월 24일 노동부에서 컬러리스트 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인증시험을 실시하기로 발표하였고, 2002년 12월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산업 디자인 직무분야로 컬러리스트 기사,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검증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컬러리스트는 건축·환경분야, 섬유·패션분야, 제품디자인분야, 그래픽·영상분야, 미용분야, 원예·조경분야, 염색·도장분야 등 다양한 직업분야에서 활용되어 근무할 수 있으며, 색채의 기획, 색채조사, 색채디자인, 조색 및 배색, 색채의 측정과 관리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여 그 전망이 밝다.

2. 우리나라의 컬러리스트 자격인증제도

컬러리스트 자격시험은 매년 2회 실시하며 기사(1급)와 산업기사(2급)로 시험분야가 나뉜다. 2002년도 1, 2급 자격 취득자는 605명, 2003년에는 1744명, 2004년 상반기에만 1563명으로 증가추세이다(한국 산업인력공단 발표). 자격시험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1 검증기준과 응시자격

2.1.1 컬러리스트 기사(1급)

컬러리스트 기사는 색채에 관한 과학적 이론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가지고 조사, 분석, 계획, 디자인, 관리 등의 기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며, 특히 색채업무를 종합적으로 계획-실행-검증하는 과정의 능력의 유무를 검증기준으로 삼는다.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다.

- ① 컬러리스트 2급의 자격을 취득 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② 다른 종목의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③ 대학졸업자 또는 그 졸업예정자(4학년에 재학 중인 자 또는 3학년 수료 후 중퇴자를 포함한다)
- ④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⑤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 후 동일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⑥ 기술자격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 ⑦ 응시하고자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⑧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⑨ 학점인증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의해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⑩ 학점인증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으로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1.2 컬러리스트 산업기사(2급)

컬러리스트 산업기사는 색채에 관한 기술기초이론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색채의 속성별 선정능력, 기호 연상언어, 인지력, 도색 능력의 유무를 검증기준으로 삼는다.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다.

- ①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②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2학년에 재학 중인 자 또는 1학년 수료 후 중퇴자를 포함한다)
- ③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 ④ 국제기능올림픽대회나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와 기능 장려

- 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
 ⑤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
 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⑥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대항하는 자격
 을 취득한 자
 ⑦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
 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
 받은 자 또는 동법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41
 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2.2 검정방법과 검정과목

2.2.1 검정방법

검정방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되는데, 필기시험은 합격자에 한해 실기시험을 실시한다. 필기시험은 객관식 4지 택일형이고, 실기시험은 작업형이다. 합격기준은 필기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며, 실기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다.

2.2.2 검정과목

검정과목과 주요시험항목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시 험 파 목(원 숫자는 주요항목)
필기시험	기 사	1. 색채심리/마케팅 ① 색채의 정서적 반응 ② 색채의 의미와 상징 ③ 색채와 문화 ④ 기능적 색채 ⑤ 색채마케팅의 전략 ⑥ 색채 시장조사 ⑦ 소비자 행동 ⑧ 제품 차별화 전략 ⑨ 홍보전략 2. 색채디자인 ① 디자인 개요 ② 디자인사 ③ 디자인 성격 ④ 디자인 영역 ⑤ 디자인 실무이론 3. 색채관리 ① 색채와 소재 ② 측색 ③ 색채와 조명 ④ 디지털 색채 ⑤ 조색 ⑥ 색채품질판리 4. 색채지각론 ① 빛과 색채 ② 색채지각 ③ 색채의 지각적 특성 ④ 색채의 지각과 감정효과 ⑤ 색의 혼합 5. 색채체계론 ① 색채표준 ② 먼셀색체계 ③ 오스트랄트색체계 ④ CIE, ISO색표 ⑤ 기타 표준색체계 ⑥ 색명체계 ⑦ 한국의 전통색 ⑧ 색채조화이론
		1. 색채심리 ① 색채의 정서적 반응 ② 색채의 연상과 상징 ③ 색채와 미 ④ 기능적 색채 2. 색채디자인 3. 색채관리 ① 색채의 소재 ② 측색 ③ 색채와 조명 ④ 디지털 색채 ⑤ 조색 4. 색채지각의 이해 ① 빛과 색채 ② 색채지각 ③ 색의 혼합 ④ 색채의 일반적 특성 5. 색채체계의 이해 ① 색채표준 ② 색명체계 ③ 색채조화론
	기 사	1. 3속성테스트, 색채재현(3시간) 3속성테스트 : 주어진 2색의 지정색 사이에 변화된 속성을 참고하여 자연스럽게 등간격으로 채우는 작업 조색 : 제시되는 조색견본과 같은 색을 제작하는 작업

기술해설

구 분		시 험 과 목(원 숫자는 주요항목)
실기시험 (색채계획실무)	기 사	<p>2. 색채계획 및 색채디자인(3시간)</p> <p>색채계획 : 주어진 주제 및 요구사항에 적합한 배색의 컨셉트 설정,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설정 및 배색 분포도 작성 등</p> <p>색채디자인 : 주어진 대상 스케치 위에 색채계획된 의도대로 색채디자인(표현)</p> <p>* 출제대상 : 환경(실내, 외), 제품, 섬유 및 패션, 출판, 미용, 디지털색채 등에서 출제</p>
	산업기사	<p>1. 3속성테스트, 조색(2시간 30분)</p> <p>3속성테스트 : 주어진 2색의 지정색 사이에 변화된 속성을 참고하여 자연스럽게 등간격으로 채우는 작업</p> <p>조색 : 제시되는 조색견본과 같은 색을 제작하는 작업</p> <p>2. 감성배색(2시간 30분)</p> <p>감성배색 : 주어진 주제 및 요구사항에 적합한 배색을 연출(표현) 주제 및 연상언어에 따른 배색 삼속성을 조건으로 하는 배색작업 등</p> <p>* 출제대상 : 생활환경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 등</p>
		<p>* 주요 수검자 자참 공구 :</p> <p>포스터컬러(12색), 색지, 색연필 및 기타 채색재료(붓, 팔레트, 물통 등 관련도구 포함), 가위, 칼, 자, 접착제(풀), 양면접착테이프, 드라이기, 연필, 볼펜, 그레이스케일(명도자)</p> <p>* 주요 자급재료 : 캔트지 및 지정색 등</p> <p>* 자참할 수 없는 품목 :</p> <p>참고서적, 실용한국표준색지표(Book, 공업진흥청/한국방송공사), 먼셀북 등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시험의 단서가 되는 것</p>

3. 조명디자이너와 컬러리스트

컬러리스트가 활동할 수 있는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꽃꽂이협회, 대학 및 전문대 교수직, 디자인 실, 홍보실, 문구, 팬시회사, 미용 및 헤어 셀, 색채 교육기관, 색채 측정기 개발, 식품회사, 염료회사, 영상디자인회사, 원예, 조경, 의료, 제약회사, 입출력 서비스 회사, 자동차회사, 조사 리서치 회사, 출판사, 패션회사, 페인트회사, 표본관리 및 개발실, 화장품회사, 환경관련회사, 건축, 인테리어, 정부 색채 관리기관 등에서 활동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 중에서 컬러리스트는 특히 시각디자이너, 광고디자이너와의 협동작업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본 저자들은 컬러리스트와 조명디자이너의 협동작업(group work)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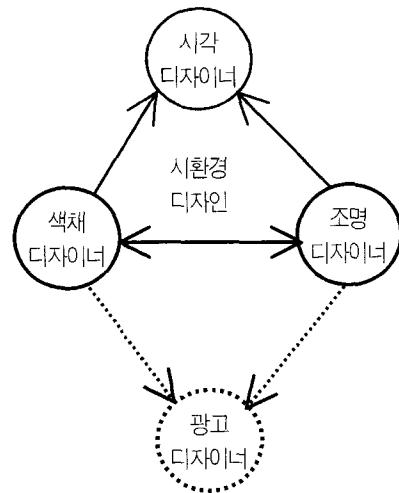


그림 1. 컬러리스트와 조명디자이너의 협동작업

색채는 빛이다(color is light)라는 말이 있다. 이는 색은 빛에서 나오는 것으로 주지하다시피 간상체

와 추상체의 역할에서 차이를 보일 뿐 빛과 색의 지각 메커니즘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빛 환경의 조건에 따라 색환경의 평가는 상당히 달라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색환경이 원래 가지고 있는 특성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도 있다. 즉 빛이 없는 색은 존재할 수 없으며, 색이 없는 빛은 생명감을 느낄 수 없다. 이와 같이 빛환경과 색환경은 시환경(視環境)을 형성하는 양대 축으로서, 지각시스템이 매우 유사하며, 생활환경 속에서도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빛환경을 체계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전문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조명디자이너이며, 색환경의 전문가는 컬러리스트이다.

그러나 조명디자이너와 컬러리스트가 서로 많은 부분을 인터페이스 영역으로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명디자이너는 공학적인 영역에 속하며, 컬러리스트는 디자인학적인 영역에 속하므로 매우 다르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컬러리스트 검정과목 중 빛과 관련되는 부분은 색채관리와 색채지각론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며, 조명디자이너의 교육내용(조명디자이너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아니므로 본 학회에서 양성하고 있는 조명디자이너 교육내용을 참고함)에서도 색채관련 부분은 지극히 일부분뿐이라는 것을 보아도 조명디자이너와 컬러리스트의 상호연계영역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되풀이하여 서술하듯이 조명디자이너와 컬러리스트가 갖추어야 할 지식과 실행능력의 상당부분은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 유사한 점이 매우 많으며, 매우 인접한 영역이다. 즉 디자인적 능력을 갖춘 조명디자이너나 공학적 지식이 탄탄한 컬러리스트만이 각자의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능력 있는 조명디자이너와 컬러리스트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미 조명디자인이나 컬러디자인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전문심화연수과정을 통한 협동(group work)의 장(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지각시스템과 표

현기법의 기초가 유사하지만 생활환경에서의 활용범위는 다양한 인접분야간에는 각 전문 영역의 심화뿐만 아니라 인접관련 영역과의 크로스오버(cross-over)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덧붙여 컬러전문가 양성은 컬러리스트라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자격증 취득자로 공인받고 있으나 조명전문가의 양성은 아직 학회 차원의 교육만 하고 있다. 따라서 조명디자이너도 하루빨리 국가 기술자격 종목의 직무분야로 자리 잡게 되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박영순 옮김, 실내건축의 색채, 교문사, 2000.
- (2)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 www.krdkorea.or.kr
- (3) 한국색채학회 편, 컬러리스트(이론편), 국제, 2002.
- (4) 한국색채학회 홈페이지 : <http://www.color.or.kr>
- (5)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홈페이지 : <http://www.kiiee.or.kr>

◇ 저 자 소 개 ◇—————



안옥희(安玉姬)

1961년 11월 28일생. 1984년 영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졸업. 1990년 일본 국립나리여자대학 생활환경학전공 박사학위취득. 현재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교수. 본 학회 편수위원.



김현지(金玹志)

1968년 6월 8일생. 1992년 영남대학교 원예학과 졸업. 2000년 영남대학교 가정학과 주거학전공 이학박사 취득. 현재 영남대학교 생활과학부 객원교수.